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40

발의연월일: 2020. 12. 4.

발 의 자 : 김예지 · 황보승희 · 이명수

김선교・김석기・류성걸

구자근 • 이달곤 • 홍석준

김형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등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맹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, 상해에 이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제재 규정일 뿐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, 사고가 발생한 후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은 갖추어져 있지 않음.

이에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고, 사람의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(안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맹견의 소유자는 사람의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힌 맹견에게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격성 행동을 교정하는 훈 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7조제1항제2호의7을 제2호의9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7 및 제2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7. 제1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맹견에게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소유자
- 2의8. 제1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맹견에게 공격성 행동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소유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	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
개정법률	개정법률
제13조의2(맹견의 관리) ① ~ ④	제13조의2(맹견의 관리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
	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복종 훈련을 받도록
	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⑥ 맹견의 소유자는 사람의 생
	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맹견
	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공격성 행동을
	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여
	<u>야 한다.</u>
제4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47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
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
부과한다.	
1. ~ 2의6. (생 략)	1. ~ 2의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7. 제13조의2제5항을 위반하
	여 맹견에게 복종 훈련을 받
	도록 하지 아니한 소유자
<u> <신 설></u>	2의8. 제13조의2제6항을 위반하

	여 맹견에게 공격성 행동을
	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지
	<u>아니한 소유자</u>
<u>2의7.</u> (생 략)	<u>2의9.</u> (현행 제2호의7과 같음)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